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자카드 단말기 등 설치·운영 의무 신설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5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등 설치·운영 의무 신설 (안 제13 조제5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8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6조).

Ⅲ. 검토의견

1.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등 설치·운영 의무 신설

(안 제13조제5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전자카드 발급 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생략)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u>사용</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 ---- <u>사용</u> ,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및 이동통신단말

	<u>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u> ----- -----.
제26조(과태료) ① (생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u>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주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받은 하수급인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¹⁾²⁾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구분	유 형	기준
공공부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이 발주하는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민간부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이외 민간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임.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현장에 출퇴근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전자카드제 운영 방식>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바, 현행법 시행령은 전자카드 발급 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³⁾

그러나 현행법 체계와 같이 사업주의 단말기 설치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어 단말기 설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단말기 설치 의무를 법률에 상항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카드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근로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소속 및 직종 지정 후 출·퇴근 버튼을 클릭하는 등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상대적으로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⁴⁾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오류 발생의 확률이 단말기보다 높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 시행령은 이를 고려하여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예외적인 경우에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건

4) 2024년 12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중 50대는 32.5%, 60대 이상은 22.9%로,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취업자 분포 및 추이)

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단말기 설치·운영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추가하여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